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51회 제2차 정례회

# 검 토 보 고 서

2021. 12. 9 (목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**행정건설위원회**  
(전문위원 유준상)

#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## 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마포구청장
- 제안일 : 2021. 11. 16.
- 회부일 : 2021. 11. 17. (의안번호 : 21-112 )

## 2. 개정이유

-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 가액을 규정하고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- 자원봉사 참여자 경품 제공 가액 범위 마련(안 제16조제2호)
- 자원봉사자증 발급 규정 신설(안 제16조의2)

## 4. 관계법령

-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## 5. 검토보고

- 본 개정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 가액을 규정하고,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으로는 제16조제2호 중 “범위 안에서 기념품·상품권 등 경품” 을 “범위에서 2만원 상당의 기념품·상품권 등” 으로 변경하고, 제16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임.
- 신설내용은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전년도 연간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(표1)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,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구 또는 수탁기관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·사용료·수강료 등을 관련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감면하는 내용임.

< 표1: 연도별 자원봉사 100시간 이상 마포구 자원봉사자 수 >

연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 9월
100시간 이상 봉사자(a)	1,170명	1,013명	414명	241명
주민등록인구(b)	375,077명	374,035명	371,890명	369,903명
비율 (a/b*100%)	0.31%	0.27%	0.11%	0.07%

## 6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 참여자에게 2만원 상당의 기념품·상품권을 제공하고 연간 100시간 이상 우수 자원봉사자의 공공시설 이용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.
  
- 또한, 자원봉사 참여자에게 2만원 상당의 기념품·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의 기여와 저변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,
  
- 연간 100시간 이상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적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51회 제2차 정례회

# 검 토 보 고 서

2021. 12. 9 (목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자원봉사자 우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**행정건설위원회**  
(전문위원 유준상)

# “자원봉사자 우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”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## 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마포구청장
- 제안일 : 2021. 11. 16.
- 회부일 : 2021. 11. 17. (의안번호 : 21-113)

## 2. 개정이유

-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- 자원봉사자 공공시설 이용 우대를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안

연번	자치법규명	개정 내용	비고
1	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	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20% 감면	조례안 제1조
2	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」	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사용료 할인	조례안 제2조
3	「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	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사용료, 수강료 100분의 20 감면	조례안 제3조
4	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	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사용료 등 100분의 20 감면	조례안 제4조
5	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	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는 주차요금 100분의 20 할인	조례안 제5조

## 4. 관계법령

-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

## 5. 참고사항

- 연도별 자원봉사 100시간 이상 마포구 자원봉사자 수

연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 9월
100시간 이상 봉사자(a)	1,170명	1,013명	414명	241명
주민등록인구(b)	375,077명	374,035명	371,890명	369,903명
비율 (a/b*100%)	0.31%	0.27%	0.11%	0.07%

- 공공시설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액 전망

- 2019년 기준 예상 세입 감소액 연 10,951천원

시설명 (담당부서)	이용요금 내용	'19년 세입징수액(천원)	감면적용 시 세입감소분(천원)
구청사 부설주차장 (총무과)	주차요금	117,418	70
자치회관 (자치행정과)	대관료	37,125	2
마포아트센터 (문화예술과)	대관료	436,070	262
	수강료	3,217,540	1931
청소년문화의집 (이동청년과)	프로그램 강습료	747,032	448
마포구민 체육센터 (생활체육과)	대관 등 사용료	856,728	514
	수강료	706,423	424
염리생활 체육관 (생활체육과)	대관 등 사용료	54,747	33
	수강료	378,078	227
성미산체육관 (생활체육과)	대관 등 사용료	91,938	55
	수강료	258,883	155
공영주차장 (교통지도과)	주차요금	11,383,929	6,830
합계		18,285,911	10,951

※ 세입감소분 계산식 : 2019년 세입징수액 \* 20%(감면비율) \* 0.3%(1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수/주민등록 인구수)

## 6. 검토보고

- 본 개정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  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
(제1조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) 별표 2의 감면대상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와 감면비율 20%를 신설하는 내용임.
  
- (제2조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」) 제13조의3제1항의 제17호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를 신설하는 내용임.
  
- (제3조 「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) 제11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는 개인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20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임.



- (제4조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)  
제7조제3항에 제7호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는 100분의 20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임.
- (제5조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)  
별표1에 제26호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임.

## 7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의 공공시설 이용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 정비대상인 자치행정과, 문화예술과, 생활체육과, 아동청년과, 교통지도과 등 5개 부서에 해당하는 조례를 별도로 개정할 경우 입법절차의 비경제성·비능률성이 우려되어 일괄 개정하는 것임.
- 또한,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의 기여와 저변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.